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목적

-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 1) 명 칭 : (주)늘사랑재가복지센터
- 2)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38번길 82, 2층(가야동)

3.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 1)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2)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모집방법
 - ①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 ②오프라인 모집 :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4. 계약기간

-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6.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개정 2024. 01. 01>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개정 2024. 01. 01>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다. 등급별 월한도액 <개정 2024. 01. 01>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